후대교배종 옥수수 MON 87460 x MON 89034 x NK603

1. 법적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제12조 3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제4-9조

2.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

	모품종 1	모품종 2	모품종 3
Event 명	MON 87460	MON 89034	NK603
특성	가뭄저항성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심사완료일			

3. 심사경위

○ '08.1.1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
- '11.11.17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

4. 심사결과

- Southern blot 결과로부터 단일 이벤트의 유전자가 각각 안정적으로 후대교배종 MON87460×MON89034×NK603으로 유전됨이 확인되었고, 후대교배종에서의 CSPB, NPTⅡ, Cry1A.105, Cry2Ab2 및 CP4 EPSPS 단백질도 모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형질발현에 있어 상호작용이 일어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MON87460×MON89034×NK603의 *cspB* 유전자에 의한 한발저항성, *cry1A.105* 및 *cry2Ab2* 유전자에 의한 나비목해충저항성, *cp4epsps* 유전자에 의한 제초제 내성에 대한 온실 또는 포장시험결과로부터 한발내성이나, 나비목해충저항성 및 제초제 내성이 각각의 해당 단일 이벤트와 유사하여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성분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대조군 및 참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도입유전자들간에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